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손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45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3.

발의자 : 손혜원 · 고용진 · 김민기

김병욱 · 김정우 · 남인순

박정 · 유은혜 · 전재수

정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
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
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함)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
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·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(이하 “긴급보호무
형문화재”라 함)를 지정하는 경우와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하는 경우에
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이 지
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
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.

또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시에도 적

시성 및 사안의 경미함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,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·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 및 제10조 등).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”을 “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”를 “특히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”을 “지정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

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1.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

2.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 학교로”를 “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”로 한다.

제32조제5항 중 “시·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부 칙

i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 8. “명예보유자”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<u>제18조제1항</u> 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<u>제18조제1항</u> 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<u>제18조제2항</u> 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-----. 9. ~ 11. (생 략)
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3. (생 략) <u>4.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</u> 5. · 6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5. ·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)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</u>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	제13조(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) ① ----- ----- <u>특히</u> ----- ----- -----

<p>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16조(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u> <후단 신설>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8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</p> <p>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지정을-----.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명예보유자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</p>
---	--

로 본다.

1.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

2.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
② · ③ (생략)

제30조(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)

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 중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 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
⑤ 시·도지사는 시·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·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·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

|30조(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)

① _____

_____ 중

에서 전수교육학교를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시·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_____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